제305회 정례회
2011.12.01.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2014년도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설립 계획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4년도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1년 11월 7일

○ 회부일자 : 2011년 11월 10일

3. 제안이유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의거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3,500여세대 입주예정으로 학교 신설 필요

○ 위 사항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학교 현황

학교급	지역	학교명 (가칭)	설립 규모	학생수	개교예정	위 치	비 고
초	음성	본성초	24(1)	645	2014. 3.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292-1답 일원	
중	음성	본성중	21(1)	634	2014. 3.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296전 일원	

※ ( ) 안은 특수학급 수로 전체학급 수에 미포함

나. 학교 설립 사유

혁신도시 내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3,500여세대(혁신도시 내 총 15,000여세대) 입주예정으로 인근학교 분산

수용이나 학급증설의 방안으로는 유입되는 학생 수용이 불가하여 학교 신설이 필요함

3. 예산 소요액

(단위 : 백만원)

학교명 (가칭)	부지 면적 (㎡)	재정사업			비 고
		부 지 매입비	시설비	계	
본성초	13,245	780	15,987	16,767	
본성중	14,479	840	14,875	15,715	
계	27,724	1,620	30,862	32,482	

4. 소요재원 확보 계획

(단위 : 백만원)

학교명 (가칭)	부지매입비			시 설 비 (자 체)	계	비 고
	자치 단체	자체	소계			
본성초	390	390	780	15,987	16,767	
본성중	420	420	840	14,875	15,715	
계	810	810	1,620	30,862	32,482	

5. 검토의견

○ 본 설립계획안은 진천·음성 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초·중학교 각 1개교를 2014. 3월 개교 예정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옥동리, 두촌리와 음성군 본성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총 14,940여세대가 입주예정이며, 공공기관(법무연수원외 10개)이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에 이전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중 본성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3,5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므로 인근학교 분산수용이나 학급증설의 방안으로는 유입되는 학생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조성이 시급한 관계로 이전시기에 맞추어 학교설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학교설립(개교시기)은 공동주택건설 추이와 연계하여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교설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관 계 법 령 발 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4.24]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8.6>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